

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[2004. 10. 8 조례 제122호]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 264호
일부개정 2012. 5. 18 조례 제 416호
(제명개정)
전부개정 2018. 11. 30 조례 제 833호
일부개정 2023. 11. 24 조례 제1119호
(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
「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수입금
2.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(선수금을 포함한다)
3. 국고보조금
4. 지방비보조금
5. 지방채 및 차입금
6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7.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(세출)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토지 및 지장물 매입(보상)비
2. 산업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
3.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
4.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
5. 정산금
6.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3.

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11. 24>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칙(2018. 11. 30 조례 제833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11. 24 조례 제1119호,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

「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